

2026 꿈의 스튜디오 “청주”

사회통합계층 유형 및 세부사항 안내문

1. 사회통합계층 유형 분류

구분		내용																
1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증빙자료 행정복지센터/정부24 발급 가능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증빙자료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원) <table><tr><td>구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d>7인가구</td></tr><tr><td>기준중위소득(50%)</td><td>1,282,119</td><td>2,136,613</td><td>2,761,282</td><td>3,247,369</td><td>3,685,614</td><td>4,098,907</td><td>4,512,199</td></tr></table>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282,119	2,136,613	2,761,282	3,247,369	3,685,614	4,098,907	4,512,199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50%)	1,282,119	2,136,613	2,761,282	3,247,369	3,685,614	4,098,907	4,512,199											
3	조손 가정의 자녀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4	소년·소녀 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 인정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7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이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함																
8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말하며, 산간지역/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광산지구를 말함																
9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10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자녀」																

11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1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사람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3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함
14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추천한 자 ※ 기관별 5명 이하까지 가능
15	자치단체장 추천자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6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거주 대상자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26.1. 기준/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17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18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가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에 해당되며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능력,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2. 유형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1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4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5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6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7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8	도서벽지 거주자	재학증명서
9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10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1	보훈자의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2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13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4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5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16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7	학교 밖 청소년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수험표 중 택 1
18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동)	표준화된 지능검사 기준 지능지수 70-79점이거나 DSM-IV(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기준 71-84점(표준편차 -1과 -2사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단서 등)
■ 서류발급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 콜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